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3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4.

발 의 자:성일종·권영세·김태흠

양금희 · 신원식 · 조수진

박 진 · 권은희 · 태영호

이명수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1차 연평해전, 제2차 연평해전, 천안함 폭침,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서해바다를 지키며 군인의 임무를 완수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만큼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,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「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」을 제정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23호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 안」(의안번호 제637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3. 「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」 제16조에 따른 무상 대부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